

Conditions of the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 their Problems

公共圖書館 設置現況과 問題點

張 一 世
韓國開發研究院圖書室長

1.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

한 國家를 近代化하는데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役割이 重要하다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깨닫게 되었다는 具體的인 證據가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이다.

에 당초 文教部에서 이 計劃을 작성하였을 때의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市, 郡, 區 單位로 최소한 도로 1個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公共圖書館중에서 施設基準에 未達하는 것은 그 基準에 올려 놓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第 1 表 市, 郡, 區單位別 設置計劃

區 分	1967年末設置現況			5個年計劃에 의한 設置計劃			備 考
	對地域數	既 設	未 設	新 設	擴 充	計	
郡 單 位	139	25	114	114	23	137	基準到達 6 個館은 除外
市 單 位 A	21	12	9	9	11	20	
" B	8	8			7	7	
區 單 位	20	4	16	16	2	18	
計	188	49	139	139	43	182	

※ 市單位 A는 道廳所在地를 뜻함.
市單位 B는 道廳所在地 이외의 市를 말함.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象地域數는 188個所이고, 그 당시 이미 設置되어 있는 곳이 49個館이므로 139個所만이 新設을 필요로 하는 곳이고, 이미 설치된 49個館中 施設基準에 도달하지 못한 곳 43個館을 그 基準에 도달할 수 있도록 擴充하여야 하므로 결국 182個

館을 新設 또는 擴充하는 計劃이다.

1968年을 起點으로 한 이 計劃은 新設과 擴充을 합하여 다음과 같은 年次計劃으로 되어 있었다.

1968年	28個館
1969	42 "
1970	47 "
1971	40 "
1972	25 "
計	182個館

公共圖書館의 新設 및 擴充에 있어서는 圖書館의 外郭建築費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區單位 圖書館 만은 國家가 30%, 地方自治團體가 70%를 부담토록 하였는데, 5個年計劃의 所要豫算推計는 第2表와 같다.

以上과 같은 豫算이 所要되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나 國家財政上의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豫算에 훨씬 未達하는 補助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부담에 따라 당초의 5個年計劃이 크게 차질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 따라 5個年計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10個年計劃으로 연장하였다는 말은 틀은 바 있으나, 그나마 적은 國家補助마저도 1974年度부터는 완전히 中斷되어 에 당초의 目標은 卓上空論으로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서 投入된 財政狀況

第 2 表 所要豫算推計 (單位: 1,000원)

區 分	國庫建築費補助	自 治 團 體			地方交付稅經營費	計
		建 築 費	內 部 施 設	計		
第 1 次 年 度	121,500	163,500	37,690	201,490		322,990
2 次 "	121,500	163,500	61,772	225,272	47,387	394,159
3 次 "	131,250	187,250	65,434	252,684	104,068	488,002
4 次 "	131,250	187,250	60,968	248,218	167,430	546,948
5 次 "	136,600	181,400	36,869	218,269	225,592	580,461
完 成 年 度 後					288,319	
計	642,100	882,900	262,733	1,145,633	832,846	

※ 地方交付稅 經營費라 함은 圖書館建物이 완성된 이후의 運營費는 地方教育交付稅法에 의하여 交付되는 地方教育交付金으로 充당한다는 뜻임.

을 보면 第 3表와 같다.

第 3 表 年度別 公共圖書館建築費 投入現況

單位：1,000원

年度別	建築館數	投入金額		計
		國家補助	地方自治團體 부담	
1968	10	30,000	51,184	81,184
1969	10	30,000	22,400	52,400
1970	13	30,000	38,286	68,286
1971	8	29,900	32,617	62,517
1972	13	43,632	24,600	68,232
小計	54	163,532	169,087	332,619
1973	5	34,200	14,500	48,700
合計	59	197,732	183,587	381,319

第2表의 所要豫算推計와 第3表의 실제 投入額을 國家補助와 地方自治團體 부담금으로 따로 따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第 4 表 國家補助金の 所要豫算과 投入額의 比較

單位：1,000원

年 度	所要豫算	실제補助額	比率(%)
1968	121,500	30,000	24.7%
1969	121,500	30,000	24.7%
1970	131,250	30,005	22.9%
1971	131,250	29,900	22.8%
1972	136,600	★77,832	57%
計	642,100	197,732	30.8%

★ 1972年度の 補助金 43,632,000원과 1973年度の 補助金 34,200,000원을 합친 것임.

第 5 表 地方自治團體부담금의 所要豫算과 投入額의 比較

年 度	所要豫算	投入額	比率(%)
1968	201,490	51,184	25%
1969	225,272	22,400	9.9%
1970	252,684	38,286	15.1%
1971	248,218	32,617	13%
1972	218,269	★39,100	18%
計	1,145,633	183,587	16%

★ 1972年度の 24,600,000원과 1973年度の 14,500,000원을 합한 것임.

※ 運營費는 除外하였음.

年度別로는 볼것 없이 合計로만 볼 때 國家補助는 所要豫算의 불과 30.8%를, 그리고 地方自治團體 부담금에 있어서는 國家補助比率의 거의 50%에 해당되는 所要豫算의 16% 밖에 支出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所要豫算額의 21% 밖에 投入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애당초 目標하였던 것의 5分之1 밖에 成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運營面은 어떤가를 살펴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밖에 表現할 도리가 없다. 筆者가 직접 몇몇 公共圖書館을 돌아 본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이 간 것이다.

市立圖書館에서 부터 郡立圖書館에 이르기 까지 몇개의 도서관을 除外하고는 圖書館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편이다. 司書職 및 豫算의 부족, 施設의 末備 등 모든 면에서 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전연 하고 있지 못하다.

5個年計劃의 근본정신은 말할 것 없이 좋다. 그러나 지어 놓은 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짓지 않는 것만 못하다. 오히려 제구실을 못하는 圖書館 때문에 地域社會住民들에게 圖書館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公共圖書館의 運營문제論할 여지가 없다.

2. 5個年計劃 失敗의 原因

가. 公共圖書館機能에 대한 認識不足

失敗의 가장 큰 原因은 올바른 認識이 缺如되어 있는데 있다. 公共圖書館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認識이 부족되어 있던 말이다.

이미 公共圖書館의 機能이나 必要性에 대한 것은 여러번 本誌를 통하여서도 지적되어 왔으므로 再論하지 않거니와 地域社會住民에 대한 社會教育機關으로서 一生을 통한 自己教育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機關이라는 점만은 다시 強調하고 싶다. 國民 각자가 자기 자신이 가진 能力을 최대한도로 發揮할 것이 요청되는 이때 公共圖書館이 지니는 역할은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共圖書館設置計劃이 失敗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결국 認識不足이 큰 原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5個年計劃의 無計劃性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失敗의 原因으로서는 5個年計劃이 아무런 計劃性없이 짜여진 데 있다.

즉 專門的인 지식 없이 計劃이 수립 되었다는 말이다.

筆者가 보기에는 「建物만 지으면 된다」는 式的 計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로서는 第一項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運營이 제대로 되고 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이다.

圖書館은 建物 자체 보다도 運營이 어려운 것이다. 建物만 지었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 갈 수는 없다.

建物 이외에 그 도서관을 運營해 나아가야 할 專門

職 司書문제를 度外視한 5年計劃이 어떻게 成功하겠는가? 專門의 業務를 맡아 볼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인가? 이것 역시 圖書館이라는 機關이 어떤 機關인지를 전연 認識하지 못한에서 起因한 것이다. 制度的으로 專門職司書의 確保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圖書館은 無期限으로 운영되어 나아가야 하는 機關임을 잊어버린 計劃이다. 계속적으로 資料의 新陳代謝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年年이 資料의 擴充과 奉仕活動의 擴充이 필요하다.

運營에 필요한 경비의 盈餘를 막연히 轉入金에 만의 존하는 식은 首肯이 가지 않는다. 根本的인 解決策이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計劃이 成功할 筈이 無하다.

다. 公共圖書館 行政體系의 一元化

公共圖書館에 대한 行政體系를 一元化하지 않고서는 公共圖書館문제 해결을 圓滑하게 할 수는 없다.

各種 圖書館大會나 總會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建議書나 陳情書가 수십번 제출된 것으로 안다. 二元化 또는 三元化된 現 상태로는 指導監督에 있어서나 司書職 確保에 있어서, 또는 行政문제 해결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문교부와 내무부 또는 시립으로 되어있는 現況은 다음과 같다.

第 6 表 所屬廳別 公共圖書館設置現況

1973. 12. 31現在

구분 시도별	행정구역수	도 서 관 설 치 수				비 고
		문교부	내무부	시 립	계	
서울	11	4		3	7	
부산	6	2		1	3	
경기	28	3	11		14	
강원	19	3	5		8	
충북	12	4	3		7	
충남	17	10			10	
전북	16	8	2		10	
전남	28	10	3	1	14	
경북	34	10	5	2	17	
경남	25	11	1		12	
제주	3	2			2	
계	199	67	30	9	106	

第6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教部所屬이 67個館이고 內務部 所屬이 39個館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一貫性 있는 公共圖書館政策을 밀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왜 關係된 文教部와 內務部사이에서 協調하여서 解決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文教部나 內務部에서는 現狀態가 公共圖書

館 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만일 筆者나 또는 대부분의 圖書館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一元化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왜 같은 行政府 안에서 協調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인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提起된 문제는 아니고 이미 10餘年前부터 부르짖어 온 문제인데 왜 當局에서는 이 문제해결에 소홀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解決없이 公共圖書館을 設置한다 하더라도 크게 効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二元化때문에 發展에 많은 支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公共圖書館의 指導 監督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司書職문제에 難點이 많았으며, 豫算確保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세가지의 문제는 圖書館運營에 있어서 가장 核心을 이루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論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文化公報部 傘下인 文化院 문제이다.

文化院에 대한 全般的인 概括을 다음에 취급하였거니와 文化院에서 수행하는 機能이 公共圖書館機能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文化院도 公共圖書館과 결부하여 考慮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에서 記述한 文化院관계를 보면 首肯이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단히 言及하거니와 文教部, 內務部 및 文化公報部의 三部가 解決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은 물론 아무런 計劃性 없는 散發的인 사업의 추진은 貴重한 國家豫算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責任當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3. 文化院에 대한 考察

가. 文化院의 機能과 公共圖書館의 機能

文化院의 機能은 1965年 7月 1日字로 公布된 地方文化事業 助成法(앞으로 助成法이라 略稱한다) 第2條에 규정되어 있는데 地方文化事業에 대한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施策 및 業績을 그 協助下에 一般에게 周知시키는 事業
2. 郷土文化를 啓發, 普及, 宣傳하는 事業
3. 外國의 文化機關과의 協助下에 民主友邦諸國의 文化를 紹介, 宣傳하는 事業

이상과 같은 세가지로 地方文化事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圖書館法 第15條에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즉

1.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이용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하는 일

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行事를 主催하거나 獎勵하는 일
3.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調하여 圖書館資料를 相互交流하는 일
4. 圖書館業務에 關하여 調査, 研究하는 일
5.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그런데 좀 더 理解를 돕기 위하여 위에서 引用한 公共圖書館 機能중에서 1項에서 規정한 「圖書館資料」라 함은 同法 2條에서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필요한 資料”라고 하여 資料의 內容을 明示하고 있으며, 5項에서 規정한 “...圖書館의 目的”은 同法 第1條에서 “...圖書館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和 文化的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역시 明示하고 있다.

이것으로서 文化院의 機能과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충분히 比較할 수 있는데, 助成法에서 規정한 內容은 公共圖書館 機能 속에 하나도 빠짐 없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의 目的이 바로 助成法의 目的하는 것을 전부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文化院의 施設基準

助成法 施行令 第5條에는 文化院의 施設基準으로서 다음과 같이 規정하였다. 즉

1. 建坪 64平方미터 이상의 映寫室
2. 建坪 50平方미터 이상의 讀書室과 그 附隨施設
3. 建坪 33平方미터 이상의 展示室
4. 16밀리미터 이상의 映寫機 1臺 이상과 그 附隨 施設
5. 12平方미터 이상의 展示板

이상과 같은 施設基準으로 볼 때 文化의 主要事業內容은 映寫하는 일, 讀書室의 역할, 그리고 展示室의 역할의 세가지로 要約된다.

公共圖書館은 앞에서 그 機能을 인용한 바 있지만 機能 第1項은 圖書館資料의 蒐集, 整理, 利用을 規정하였고, 第2項에서는 鑑賞會, 展示會 및 기타를 主催 또는 獎勵한다고 規정하고 있어서 文化院의 施設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以上으로 國民의 教育和 鄉土文化的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助成法이 圖書館法에서 다루고 있는 一部임을 明白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施設基準에서 한가지의 矛盾을 지적한다면 文化院을 設置하는 곳의 人口와 아무런 關聯性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人口 5萬에 있는 곳을 基準으로 한 것인지 10萬을 基準으로 한 것인지의 구별이 없다.

이에 比하면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아직 先進國

家에 比하면 훨씬 뒤떨어지는 하지만, 文化院의 기준보다 合理化되어 있다.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에 따라 別表에서 明示한 기준은 人口數에 따라 7段階로 구분하여서 施設의 規模가 정해져 있어서 小都市보다 中都市의, 中都市 보다는 大都市의 公共圖書館施設이 점차 크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일이 그 內容을 여기에 引用하지는 않으나 꼭 지적하여야 할 것은 公共圖書館은 文化院의 施設基準을 전부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點에서도 二重의이 되어 있다 하겠다.

다. 文化院에 대한 國家補助

文化院이 地方文化事業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法的인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地方文化事業助成法이 公布된 1965年 부터이다.

그러나 文化院이 存在하게 된 것은 1951年 부터인데 國家에서 文化院과 그 文化院의 聯合會에 대하여 補助를 주기 시작한 것은 1962年 부터이다.

補助額은 다음 表와 같다.

第7表 聯合會 및 文化院에 대한 國家補助實績

1973. 12. 31現在

年 度	聯合會	文 化 院	計
	補 助 額	補 助 額	
1962	1, 853, 457	2, 141, 843	3, 995, 300
1963	1, 986, 000	1, 464, 000	3, 390, 000
1964	1, 300, 000	1, 400, 000	2, 700, 000
1965	1, 700, 000	3, 300, 000	5, 000, 000
1966	3, 527, 000	3, 473, 000	7, 000, 000
1967	3, 547, 200	3, 452, 800	7, 000, 000
1968	5, 277, 500	3, 272, 500	8, 550, 000
1969	3, 093, 000	11, 906, 000	14, 999, 000
1970	2, 094, 000	7, 290, 000	9, 384, 000
1971	1, 800, 800	14, 760, 000	15, 560, 800
1972	1, 600, 000		
1973	1, 090, 000		
計	28, 868, 957	52, 400, 143	81, 269, 100

上記 第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에 따라 起伏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로 補助額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1971年을 頂點으로 줄어 들고 있다.

總計 8千萬원 이상이 補助費로 나아갔는데 과연 이에 대한 效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補助費 중에서 과연 몇%가 圖書館에 投入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文化院의 事業 전체가 公共圖書館에서 하는 일이므로 聯合會로 補助된 2,800萬 원이외의 5,200萬원은 거의 전액이 圖書館業務를 위하여 補助되었다고 判斷하여서 크게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筆者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文化院에는 거의 專門職司書가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圖書館으로서

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저 映寫機나 돌린다고 해서 文化院의 機能을 다 했다고는 文化院 자체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며, 文化院의 中心業務인 圖書館活動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만 비로소 文化院도 산 기관이 될 것이다.

라. 文化院의 現況

과연 현재의 文化院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가 문제의 核心이 될 것이므로 現況을 分析하기로 한다.

文化院聯合會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第 8 表 地域別 設置 및 運營實態現況

1973. 12. 31 現在

道 別	運 營 實 態					未設置數
	A	B	C	D	計	
서울					0	1
釜山					0	1
京畿	4	6	3	2	15	10
江原	3	2	4	3	12	7
忠北	3	5	2	—	10	2
忠南	9	7	1	0	17	1
全北	1	4	3	7	15	1
全南	7	12	—	3	22	4
慶北	8	7	4	2	21	8
慶南	9	7	—	4	20	6
濟州	—	—	—	—	0	3
計	44	50	17	21	132	44

上記表中 未設置數라 함은 郡, 市單位 設置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公共圖書館設置 5年計劃이 目標한 것과는 거의 一致하지만, 한가지 다른 것은 區가 빠져 있는 점이다.

그런데 聯合會 自體에 의한 運營實態 조사에서 4等級으로 나눈 것을 보면 C, D級은 거의 不良한 상태를 뜻하는데, A, B級이라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施設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미 前記한 施設基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機能을 발휘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不充分한 것이다.

역시 聯合會에서 文化院의 建坪을 조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50坪以上	15
150 "	29
36 "	67
36 坪以下	21
計	132

人口에 아무런 관계 없이 施設基準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公共圖書館의 경우 最下의 單位인 人口 2萬이상 4萬까지의 곳에서는 最下 50坪이어야 하며, 人口 40萬에서 50萬미만인 경우에는 最少限 500坪以上이어야 한다는 公共圖書館施設基準과

比할 때 얼마나 빈약한 施設인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현재의 文化院中에서 36坪부터 그 미만인 文化院이 88군데나 있어서 전체 132개의 文化院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注目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빈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機能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專門職司書의 全無한 상태와 것들여 생각할 때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마. 結言

結論的으로는 文化院이 文化院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는 公共圖書館과 統合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不實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地域社會 住民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며, 차라리 제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한 個館의 公共圖書館이 더 效果的인 것이다.

4.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方案

가. 諮問委員會의 設置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文教部長官 直屬下에 公共圖書館諮問委員會를 設置하는 일이다.

매우 不幸한 일이지만 文教部內에는 圖書館 專門家가, 筆者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으며, 文教部長官直屬下에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에도 文教部長官에게 諮問할만한 圖書館 專門家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公共圖書館에 대한 政策을 수립하는 文教部內에 그에 대한 專門家가 없고, 또 國立中央圖書館에도 드문 상태에서 올바른 圖書館政策이 수립될 수는 없다. 아무리 天才的인 頭腦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分野에 能通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사 있다하더라도 여러 斯界 專門家의 衆智를 모으는 것만큼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다.

5個年計劃이 失敗한 原因은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이러한 諮問機關을 文教部長官이 갖지 못한데서 起因하였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이미 여러 國家에서는 諮問機關을 두어 專門家의 意見を 종합하여 政策에 反映시키고 있다. 本人이 앞에서 지적한 바 5個年計劃의 無計劃性 같은 것 역시 이러한 機關이 있었던들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諮問委員會를 設置하는데 있어서는 大統領令이나 部令에 의하여야 하며 構成員에 대한 明白한 條項이 있어야 한다. 그 構成員에는 반드시 圖書館專門家가 2人以上 포함되어야 한다. 外國의 例를 보면 構成員은 보통 10人 內外이다.

나. 圖書館 專擔部署의 設置

이 문제도 이미 여러번 本誌를 통하여 또는 다른 圖書館專門誌를 통하여 지적된 일이지만 圖書館문제를 專擔할 部署가 文教部內에 設置되어야 한다.

美國, 日本, 英國 등등은 이미 圖書館 專擔部署를 數十年前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本人은 이미 약 14年前에 本誌를 통하여 「圖書館局」設置를 강력히 要望한 바 있다.

圖書館局은 고사하고 圖書館係도 없는 현재로서 圖書館문제에 대한 政策수립이나 문제 해결이 잘 될 이가 없다. 筆者의 見解로는 財政이 모자라서 公共圖書館 설치가 늦어지거나 안되는것이 아니라 專門家들의 智慧를 종합하여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갈 部署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部署가 신설된다면 그 部署에는 으레히 圖書館專門家가 반드시 가도록 規定되어야 한다. 지금의 國立圖書館과 같이 非專門家가 圖書館業務中에서도 專門職司書가 앉아야 할 자리를 점령하고 있어서는 올바른 專門의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圖書館專擔部署에는 반드시 圖書館專門家가 앉도록 規制되어야 한다.

다. 制度的인 面의 整備, 改善

1) 文教部, 內務部 및 文公部 所屬으로 三元化되어 있는 公共圖書館을 一元化하도록 制度的인 面에서의 整備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圖書館 專門家의 諮問이나 指導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行政部內의 관계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協助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왜 지금까지 放置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2) 司書職의 職位保障

司書職이 公共圖書館에서 그의 職位가 保障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專門의인 奉仕機關인 公共圖書館 전체를 司書專門職한테 制度的으로 맡길 수 있도록 모든 法令을 整備, 改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郡立圖書館에는 郡廳에서, 市立圖書館에는 市廳에서 左遷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지금 현상으로서는 發展할 때야 發展할 수 없다.

지금 統計를 보면 公共圖書館이 100餘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公共圖書館長으로서 專門職 司書가 책임을 가진 도서관이 몇館이나 있는가? 筆者가 알기에는 한두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1957年 延世大學校에 圖書館 學科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四個大學 圖書館學科에서 수백명의 專門職司書를 輩出하였으나 그들이 가진하여서 公共圖書館에 가고자 하지 않는 理由가 制度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圖書館 豫算의 確保

圖書館을 운영하기 위한 豫算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도록 制度的인 改善이 필요하다.

教育委員會 산하에 있는 公共圖書館을 例로 든다면 地方自治團體에서의 轉入金이 제대로 轉入되지 않는 관계로 도서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辛강이 하기에 바쁜 상태이니 이것 역시 制度的인 改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每年 꼭 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서도 改善코자 하는 誠意를 볼 수 없으니 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설치한 이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豫算과 새로운 자료 備置에 소요되는 資料購入費는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公共圖書館이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큰 理由中의 하나가 豫算不足이다.

맺 는 말

가장 基本的인 것만 記述하였다. 1966年에 改正된 英國의 公共圖書館法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도 制定됨으로써 公共圖書館 設置를 地方自治團體가 義務的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의 理想的인 公共圖書館發展策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게는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外國에서 어떻게 하여 公共圖書館을 發展시키고 있는가를 관계 기관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筆者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公共圖書館設置가 遲遲不振한 原因이 財政문제에 起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第2表에 나타나 있는 公共圖書館設置를 위한 豫算推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推計總額이 18億원도 되지 못하는 金額이기 때문이다. 高速道路建設에는 1km當 약 1億원이 所要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設置에 필요로 한 18億원은 불과 18km의 高速道路 建設費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거의 國民全體에게 惠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政策立案者가 認識만 한다면 이만한 돈 정도는 아무리 우리나라의 財政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결국은 公共圖書館에 대한 認識문제로 되돌아 가게 된다.

政策立案者가 公共圖書館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가진다면 三元化되어 있는 것의 一元化도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이며, 一元化함으로써 지금까지 散發的으로 分散하여 쓰여진 豫算을 集中할 수 있으므로 보다 効果的인 豫算執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強力한 指導監督이 역시 가능하게 되어 文字 그대로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關係者들의 熟考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